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의안 번호	6172
----------	------

발의연월일 : 2024. 12. 3.

발 의 자 : 황운하·장경태·윤종오
차규근·김준혁·조 국
김준형·서왕진·박은정
김용민·전종덕·박지원
한창민·박주민·문정복
신장식·강경숙·김선민
김재원·민병덕·정춘생
이해민·민형배·추미애
이기현·정혜경·김승원
의원(27인)

주 문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어긋나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 중 아래에 열거하는 의

혹 사건

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악용하여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

나. 2017년 추석 명절, 2018년 설날 명절과 추석 명절, 2019년 설날 명절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명절 떡값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다. 2023년 6월경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현금 배포했다는 의혹

라. 월성원전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방검찰청에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배분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된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들에게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혹

2. 대검찰청의 2017년 4월 이전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7년 5월 이전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및 그 외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무단폐기된 의혹

3.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사건)에서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정보 부존재

를 주장하는 허위문서를 작성·제출한 의혹사건

4.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일부 공개받기 시작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에서,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용도·지출방식 등에 맞지 않는 대규모 예산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며,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의 위법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임.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수사의 포상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나타남.

또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으면서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특수활동비를 특수부 검사들에게 금일봉으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심지어 특수활동비를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행태도 확인됐음.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되었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이러한 불법 의혹들은 검찰조직의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의혹이므로,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거부,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자료 불법폐기, 국회에서 관련자들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왔음.

한편,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의혹으로 진상규명이 매우 시급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관련 의혹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의혹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만성적, 관행적 위법·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자신의 권력 강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각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향후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의 집단적 범죄를 예방하는 동기가 될 것이기에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함.